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22
----------	------

제출년월일 : 2009. 11. 20.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구체적 대책 필요
- ◆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마련으로 여성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 주요내용

- 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나.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7조)
- 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에의 사업비 지원규정 명시(안 제13조)
- 마.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 지원규정 명시(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제5호,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155,000천원

피해자 연령	지원구분	산출기초	지원액(천원)
총 계	200명		155,000
7세이하	장애등급 판정자	2,000천원 × 5명	10,000
	일반 피해자	1,500천원 × 10명	15,000
8세 ~ 13세	장애등급 판정자	1,500천원 × 10명	15,000
	일반 피해자	1,000천원 × 20명	20,000
14세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1,000천원 × 35명	35,000
	일반 피해자	500천원 × 120명	60,000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 2009. 10. 30 ~ 11. 18 (20일간)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행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안산시의회
 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5.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로금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위로금 지원대상은 성폭력 피해사실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의료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 피해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가족여성과
임	실·과장 직위·성명	가족여성과장 김 종 수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여성정책담당 이 정숙
자	담당자 성명·전화	김 경철 (행정 2264)

[별표 1]

위로금의 지원 기준(제14조 관련)

피해자 연령	지원구분	지원액(원)
7세 이하	장애등급 판정자	2,000,000
	일반 피해자	1,500,000
8세 ~ 13세	장애등급 판정자	1,500,000
	일반 피해자	1,000,000
14세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1,000,000
	일반 피해자	500,000

- 주: 1. 장애등급 판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일반 피해자라 함은 장애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성폭력피해로 의료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922
----------	------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의 지원은 현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로금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제14조(위로금의 지원)를 삭제함.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위로금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위로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③ 위로금 지원대상은 성폭력 피해사실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의료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 피해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p>	(삭제)
제15조 ~ 제17조 (생략)	제14조 ~ 제16조(원안과 같음)